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8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윤영석·조경태·구자근

박덕흠 • 김태호 • 박대출

엄태영 · 정동만 · 최보윤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축물,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하고 있음.

한편, 기계식주차장의 유지·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,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정하여 그 설치를 제 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,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,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보험 가입 의무,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

의 운행중지명령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었음.

기계식주차장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할 때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활용이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5제2항제3호삭제).

법률 제 호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의5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9조의5(기계식주차장의 설치	제19조의5(기계식주차장의 설치		
기준 등) ① (생 략)	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	2		
도・시・군 또는 자치구는 지			
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			
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			
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			
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3.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	<u><</u> 삭 제>		
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			